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2. 1.(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21. 1. 18.
- 나. 제안자 : 전재운 의원 외 7인 발의
- 다. 회부일자 : 2020. 1. 18.
- 라. 상정일자 :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2월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재운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립예술단원의 정년 연장(2017. 1. 1.)에 따른 단원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실력저하 등의 우려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며,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시립예술단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의 운영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시립예술단원의 선순환 유도 및 예술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예퇴직제도 도입(안 제10조)

- 징계 등 시립예술단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징계위원회 신설(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시립예술단원의 정년 연장(2017. 1. 1.)에 따른 단원의 고령화 및 실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립예술단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운영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예술단원 명예퇴직제도는 인천, 울산을 제외한 타 광역시와 국립예술단이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근거한 단체협약서에 ‘명예퇴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타 시·도 예술단원 명예퇴직제도 운영 현황》

분 류	근 거	도입 시기	2020년도 사례	2021년도 예산(천원)
인 천	(조례개정 추진 중)		-	-
부 산	규칙	2016. 12. 7.	무용단 1명	80,000
대 구	규칙	2018. 12. 10.	국악단 1명	140,000
대 전	조례, 규칙	2017. 12. 29.	교향악단 1명 무용단 1명 사 무 1명	300,000
광 주	조례, 규칙	2017. 3. 1.	발레단 2명 합창단 1명	200,000
울 산	(단체협약서 협의 중)		-	300,000

- 예술단 징계에 관한 사항은 타 광역시의 경우 별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예술단별 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인천시 종합감사 시 소위원회가 없는 ‘기획홍보마케팅’ 단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기구가 없음이 지적되어¹⁾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임.

《타 시·도 예술단 징계위원회 운영 현황》

분 류	근거	위원장	간사	위원수	주요구성
인 천	소위원회 (조례)	소위원회 (관장)	소위원회 (담당사무관)	소위원회 (3~7)	소위원회 (관장, 예술인)
부 산	규칙	관장	위원장 지명	4~8	변호사, 교수 등
대 구	조례	호선	예술단 과장	5~7	변호사, 교수 등
대 전	규정	국장	담당사무관	4~7	대전시 인사위원 등
광 주	규정	국장	담당사무관	4~7	인사과장, 본청 과장, 관장 등
울 산	규칙	관장	담당주무관	4~8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소위원회)

- 소위원회 기능 중 징계에 관한 사항, 해촉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12조에 징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전형위원)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명예퇴직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전형과 정기평정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전형위원’이 명예퇴직 심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1) 2019년 인천시 종합감사(2019.6.3.~6.7) 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단원 징계위원회 구성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10조(위촉연령)

- 예술단원은 신분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나,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임.
- 현행 조례 제10조 제2항은 정년을 적용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일을 명시한 것이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 권고(2019.10.24.)에 따른 삭제 사항임.
- 개정안 제2항은 「법」 제66조의2를 준용한 것으로 고령에 속하는 단원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젊고 우수한 인력을 위촉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술단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신설 조항임.

□ 안 제12조(징계위원회)

- 현재 인천시 예술단원의 징계 심의는 현행 조례 제5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공연계획 및 평가, 징계 심의를 담당하는 ‘예술단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해당 예술분야 전문가로 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의 구성 특성 상 징계 심의를 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 ‘징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기존 소위원회의 기능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임.

※ 징계위원회 운영 시·도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안 제13조(해촉)

- 해촉에 관한 사항을 현행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제9호의 해촉사유는 조례입법의 경제성과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나 규정으로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호는 하위 운영규칙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는 내부적인 심의 사항으로 운영 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정기평정에서 연속으로 ‘가’등급을 2회 받은 자의 경우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27조²⁾에 강등 또는 해촉으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제18조³⁾에 해촉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13조제1항제4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현행 제8호(안 제3호) 중 “요양을 요하는 사람”은 일본어 투 표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명예퇴직 도입 관련 노조와의 협의는? 재원 마련 계획은?
 - 작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사항이며, 예산은 추경에 반영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본어투 표현을 정비함.
- 하위규칙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

2) 제27조(평정에 따른 조치) ① 관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2회 이상 평정등급 “가”를 받는 등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 제18조(평정에 따른 조치) 관장은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평정등급 “가”를 받은 단원에 대하여는 1호봉 강등, 예능연구수당 승급 2회 보류 및 연속 2회 받을 시에는 해촉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중 제3호 “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p>6. <u>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u></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7. <u>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u></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8. <u>요양을 요하는 사람</u> <신 설></p>	<p>3 (현행 제8호와 같음)</p> <p>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 의한 정기평정에서 연속으로 ‘가’등급을 2회 받은 자</p>	<p>3. <u>요양이 필요한 사람</u> <삭 제></p>
<p>9. <u>그 밖에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술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술단장”을 “그 밖에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 중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을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명예퇴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상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유,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고 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부 사항, 그 밖에 <u>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4조 (운영위원회) ① ----- ----- ----- <u>단장</u>----- ----- -----.</p>
<p>제5조 (소위원회) ① 예술단의 연간 주요공연계획 및 공연평가에 관한 사항과 <u>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의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5조 (소위원회) ① ----- ----- ----- <u>그 밖에 단장</u>-----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심의사항 중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u></p>	<p>⑤ <u>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u></p>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04-09>

⑥ (생략)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③ (생략)

제10조 (위촉연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1. 삭제<2017-11-13>

2. 삭제 <2017-11-13>

<신설>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전형위원) ① -----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명예퇴직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위촉연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상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유,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해촉)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해촉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2. (생략)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5.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6.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8.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9. 그 밖에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 제19조 (생략)

제13조(해촉) -----

----- 징계위원회 -----

----- 징계위원회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

----- 요양이 필요한 사람

<삭제>

제14조 ~ 제20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